

의안번호	2218259
의 퇴 인	윤상현의원
회 답 일	2026.5.6.
추계번호	26C2071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3항 (인과관계의 추정)	○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. 1. 이물질이 발견되었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백신 또는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2.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관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 3. 질병관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백신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공포한 사항에 해당하는 백신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제3항 (인과관계의 추정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, 피해보상 또는 지원 관련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현행법 제6조(인과관계의 추정)¹⁾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, 장애,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⁾
 - 개정안은 제6조제1항이 명시한 요건 하에서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³⁾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규정하므로 피해보상 및 지원⁴⁾ 관련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감사원 보고서⁵⁾에 따르면 '21년~'24년 사이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의 백신 접종 총량은 42,914,250회분이며,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경우는 3,238건, 보관방법이 잘못된 백신 주입은 113건임
- 개정안에 따른 추가 피해보상금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규모와 개별 진료비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 피해보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1) 제6조(인과관계의 추정)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.

1.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
2.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아니할 것
3.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,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것

② 제1항에 따라 인과관계 여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질병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,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
2)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및 지원 내용과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지원 현황을 참고자료로 제시함(p.4, p.5)

3) 안 제6조제3항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

4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(국고 부담 경비), 제71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 보상), 동법 시행령 제29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)에 따라 피해보상금은 국고에서 부담함

5) 감사원, 감사보고서(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), 2026.2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

□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지원 내용

1. 진료비

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. 다만,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2. 간병비: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

3.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

－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에 따라 사망 보상금의 100분의 100~10

4.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

－ 지급기준: 사망 당시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

사망 시점	사망일시보상금(백만원)
2021.1.1.~2021.12.31.	437
2022.1.1.~2022.12.31.	459
2023.1.1.~2023.12.31.	482
2024.1.1.~2024.12.31.	494
2025.1.1.~2025.12.31.	503
2026.1.1.~2026.12.31.	517

5. 장제비: 30만원

자료: 질병관리청 제출자료

□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지원 현황

(단위: 천/백만원)

구분		2021		2022		2023		2024		2025	
보상 및 지원 현황		건	집행액	건	집행액	건	집행액	건	집행액	건	집행액
보상	진료비 및 간병비	1,712	332	20,219	3,348	2,450	1,259	290	233	71	18
	장애인일시 보상금	—	—	—	—	—	—	1	253	1	494
	사망일시 보상금	1	438	14	6,072	6	2,497	3	1,139	2	887
지원	진료비 및 간병비	17	272	124	446	1,072	604	870	754	71	83
	사망위로금	—	—	8	700	2	200	1	100	1	100
	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 등	—	—	40	400	13	122	2	8	19	119

자료: 질병관리청 제출자료